

#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컨설팅 서비스



# 책무구조의 도입 배경 및 규제 동향

## 지배구조법 개정 배경

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, 근본적으로 현행 규율이 '형식적·절차적 의무'로 인식될 뿐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「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」을 발표하고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



## 주요 개정 사항

지배구조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, 금융회사는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 영역별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.

이사회	대표이사의 총괄관리의무 이행을 관리·감독(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)
대표이사	내부통제등의 총괄관리의무
임원	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의무(조치)
책무구조도	대표이사의 책무구조도(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) 마련 의무
관리조치	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
제제·면책	제제 시 '상당한 주의'를 다하여 관리의무(조치)를 수행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
적격성 심사	임원 선임 시,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, 업무경험, 정직성 및 신뢰성을 고려

## 책무구조도 적용 시점

책무구조도는 금융위원회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, 제출기한은 금융회사의 업종 및 규모 별로 각기 다르게 요구되고 있습니다.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도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.

은행	금융지주회사	금융투자업자	보험사	여신전문 금융회사	상호저축은행
전체 → 1단계	전체 → 1단계	자산총액 5조원↑ / 운용재산 20조원↑ + 종합금융회사 → 2단계	자산총액 5조원↑ → 2단계	자산총액 5조원↑ → 3단계	자산총액 7천억↑ → 3단계
		그 외 → 3단계	그 외 → 3단계	그 외 → 4단계	그 외 → 4단계

\* 1단계 (2025.1.2까지) → 2단계 (2025.7.2까지) → 3단계 (2026.7.2까지) → 4단계 (2027.7.2까지)

# 책무구조도란?

## 책무구조도 개념

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임원과 **임원의 직책별로** 이 법, 「상법」, 「형법」,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입니다.**

## 책무구조도 구성

### 책무체계도

####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

- 임원의 직책 별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
- 임원 별 성명, 직책, 책무명 등 포함



### 책무기술서

#### 임원 별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

-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, 책무 상세내용, 관리의무 기술
- 소관부서, 겸직 여부 및 내용, 주관회의체, 유관법령 등

총괄	준법감시실	설정	김준경	직책	총괄감사인, 지금 세탁방지 업무 책임자, 대유소비자보호 책임자
직책	운영감사인	직위	부대표	설명	
부서	준법감시실, 법무부				
총괄 법령	금융회사법 제 내구조에 관련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정보의 보고 및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				
운영 내부	내부통제 규정 준법감시규정 지금 세탁방지 업무 규정				
주관 회의체	내부통제위원회 서관 세탁방지 사업의회				
책무	책무 상세				
운영감사	내부통제 기관 종사원부 성급 및 내부통제 위원회 조직				
차급세탁 방지	차급 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체적 구축·운영				
금본소비 자보호	금 소비자보호업무 총괄				

##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

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책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, 세부 업무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금융회사는 조직 및 임원 별 직책 및 소관업무를 기준으로 해당 책무를 적절히 배분하도록 요구됩니다.

### 1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(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 등)

- 위험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
- 준법감시업무와 관련된 책무
-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

### 2 금융영업 관련 책무 (인허가 받은 고유 업무와 부수, 경영업무)

- 예금 및 적금 업무와 관련된 책무
- 투자매매업무와 관련된 책무
- 신탁업무와 관련된 책무
- 연금업무와 관련된 책무

### 3 경영관리 관련 책무 (영업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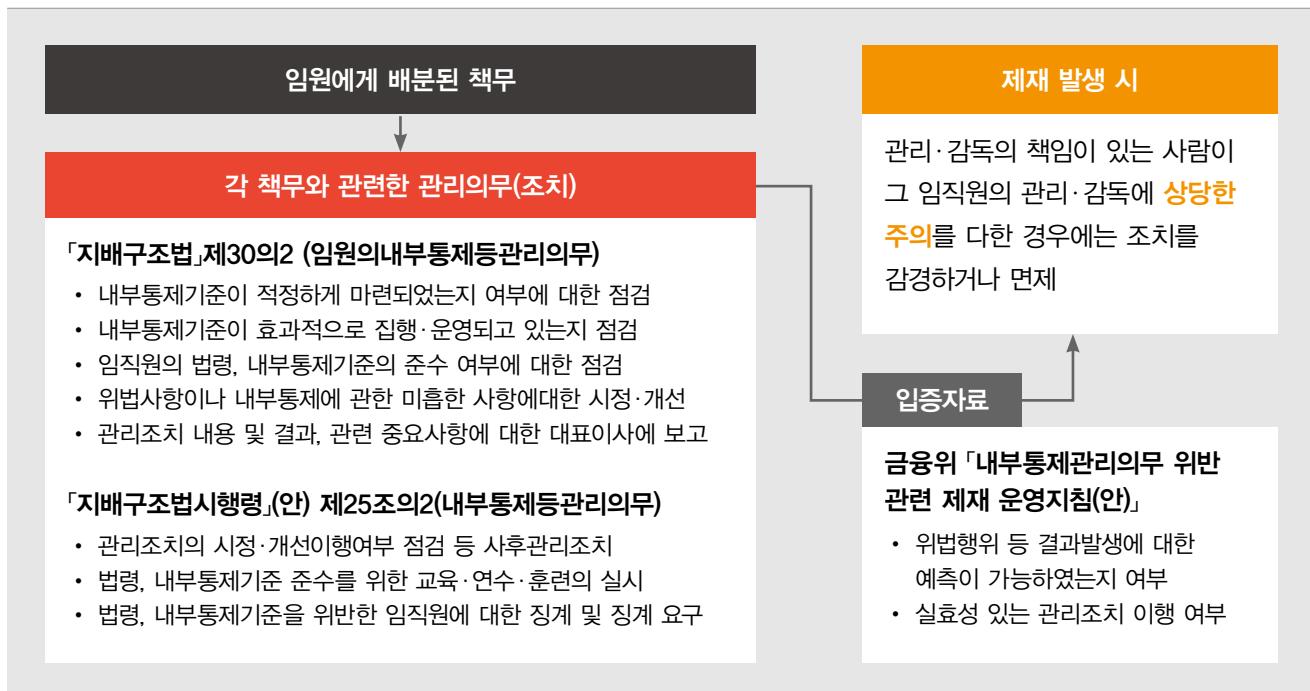
- 인사업무와 관련된 책무
- 광고업무와 관련된 책무
- 자회사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
- 건전성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

# 관리조치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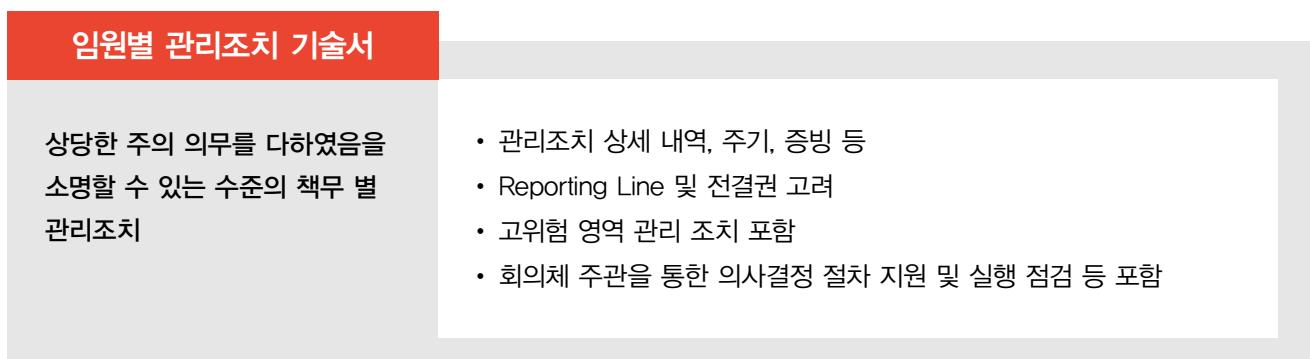
## 관리조치 작성 기준

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작성해야 합니다. 관리조치 기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는 아니나,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.

## 임원의 관리의무(조치) 기준



## 관리조치 기술서 상세내역





## 컨설팅 수행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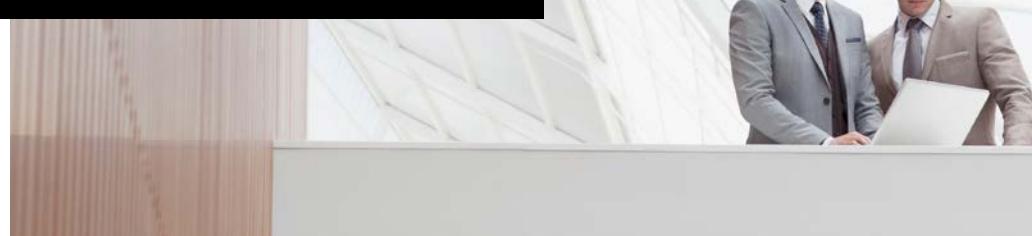
### 컨설팅 추진 방향

책무구조도 컨설팅은 각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**법령 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, 책무 관련 각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조치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며 ‘상당한 주의’를 다하였다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설계를 수행합니다.**

### 주요 과제 및 산출물

책무구조도 마련	책무구조도 작성대상 기준 수립 및 선정	① 전사 책무체계도 ② 임원별 책무기술서
	법령 및 내규 검토를 통한 전사 기준 책무 식별	
관리 방안 설계	중복, 누락, 편중 없는 임원 별 책무 배분 및 책무구조도 마련	③ 임원별 관리조치 기술서 ④ 책무 관련 내부통제 Checklist · 매뉴얼
	부서의 내부통제 활동을 고려하여 임원의 책무 별 관리조치 이행방안 마련	
책무관리 시스템 구축	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 방안 마련 및 임원의 관리조치와 연계	⑤ 시스템 요건 정의서
	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립	
	책무 신설, 변경 등에 따른 변화관리 방안 수립	
	책무구조도 마련	
	책무 및 관리조치 변경관리, 모니터링, 증빙 및 이력관리 기능 등	

# 삼일PwC 컨설팅 사례



## 국내 Best Practice 사례 보유



삼일PwC는 지배구조법 법안 발의(2023.9.11) 후 **대형 은행 및 지주의 책무구조도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**하였으며,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 및 이슈의 사전적인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금융권 책무구조도 Best Practice 발굴 및 작성 기준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또한 PwC Network를 통하여 보유한 국내 책무구조도 도입의 Benchmark 대상인 영국의 SMCR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

## 다수 컨설팅 수행 경험



삼일PwC는 **최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컨설팅 경험을 보유**하고 있으며, 다수의 보험사, 증권사 등의 컨설팅을 수행 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 및 효과적인 책무구조도 도입에 최적화 된 업무수행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금융업 내부통제를 포함한 지주, 은행, 증권, 보험 등 각 업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책무구조도 컨설팅 팀을 운영 중이며, 법령 상 요구되는 책무구조도 마련, 내부통제에 실무적인 도움이 되는 관리조치 이행 방안 수립, 책무관리시스템 구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## 삼일PwC 책무구조도 컨설팅 팀

삼일PwC는 책무구조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 
금융업 및 내부통제 전문가로 구성된 최적의 팀을 운영 중이며,  
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요구사항 및 고객의 니즈에  
충족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### 삼일회계법인 금융본부

#### 민대홍 Partner

금융업 및 내부통제 전문가  
dae-hong.min@pwc.com  
02-3781-3222

#### 권문경 Director

금융업 및 내부통제 전문가  
moon-kyung.kwon@pwc.com  
02-3781-9327

[www.samil.com](http://www.samil.com)

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,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,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S/N: 2408F-BR-026

© 2024 Samil PwC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/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,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[www.pwc.com/structure](http://www.pwc.com/structure) for further details.